

의안번호	제343호
의결연월일	2021. 5. 10.

-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5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5. 10.

제26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도시재생과장 : 윤 찬 기]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" 공동이용시설" 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" 공익목적에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" 신설

나. 주요내용

-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(안 제2조)
 - 공동이용시설 추가 : 제2조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 신설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(안 제18조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

(안 제2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7조)

-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제18조(시행규칙)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이 춘 근]

- 「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“**공동이용시설**”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,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“**공익목적**을 위한 **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**”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**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**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제18조제2항 제6호의 내용 중 「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수정

6. 심 사 결 과

○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【별표1】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) 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1.~2. (생략) 6.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<u>「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 기업</u></p>	<p>제18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) ① (개정안과 같음)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, ~5. (개정안과 같음) 6. ----- <u>「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</u></p>